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1. 24 선고 2021가단618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, 이민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9. 1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9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은 2016. 3. 16.경 주식회사 E(이하 'E카드'라 한다)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, 당시 C은 E카드에게 D이 위 계약에 기해 E카드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10,000,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.

2) D은 E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이에 E카드는 2017. 9. 30. D에 대한 채권을 F 주식회사(이하 'F'이라 한다)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, F은 2018. 2. 21.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3)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4863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21. 4. 22. 위 법원으로부터 '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,231,144원과 그 중 9,965,123원에 대하여 2020. 2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C은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았고,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4)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2021. 6. 22.을 기준으로 원금이 9,965,123원, 이자가 9,699,206원으로서 C의 보증한도액 10,000,000원을 초과하였고, 그 이후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,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금액은 10,000,000원이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

1) C은 2017. 9. 1.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

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1) 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하고, 2017. 9. 13.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2) 한편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8,000,000

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(이하 'G은행'이라 한다)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21. 9. 17.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E카드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순차 양수한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, 이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2)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3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C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200,000,000원을 대여하였는데, C이 피고에게 최저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여 C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, 위 대여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일 뿐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

못하였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나 전득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

1)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6711 판결,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2)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3) 한편,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,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,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인바,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2021. 9. 6.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892,000,000원에서 G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

47,124,942원을 공제한 844,875,058원(=892,000,000원-47,124,942원)이고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위 공동담보가액에 미달하는 10,000,000원이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문현정

부동산 목록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147.6㎡

2. 대구광역시 달서구
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달서구

세멘벽돌조슬래브지붕2층단독주택 1층 81.96㎡ 2층 67.44㎡,

세멘벽돌조슬래브지붕단층변소 1㎡ 끝.

1)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3개의 콘도미니엄 지분권이 있었으나, 위 3개의 콘도미니엄 지분권은 그 가액의 합계가 426,567원(=H콘도미니엄 I호 중 1/3,000 지분 667원 + J콘도미니엄 K호 중 1/200 지분 145,900원 + L콘도미니엄 M호 중 1/428 지분 280,000원)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.